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5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3 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세무 및 법률정보

- 조세심판원, '24 년 1/4 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국토부, 8 천만원, 임차기간 합산 1 년 이상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3 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출처: 금융감독원 2024.5.3]

개요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였습니다
- 금번 '23년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현황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에 공개하는 '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으로,
- 이외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으로 구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건)

공개 시기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연도	'23년	'22년	'21년	'11년~ '14년	'20년	'15년~ '17년	'18년~ '19년	'11년~ '23년
지적 유 형								
① 매출·매출원가	6	3	4	4	5	12	4	38
② 투자주식	-	4	3	4	5	6	4	26
③ 재고 및 유·무형자산	2	3	3	-	1	5	7	21
④ 기타자산·부채	4	5	2	8	2	5	7	33
⑤ 주식미기재 등	2	3	3	11	2	9	7	37
지적사례 수(합계)	14	18	15	27	15	37	29	155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3.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 (사실관계) A 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였음

*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여, 무자로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하였음

총 공사예정원가

-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되었으며,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하였음

< 공사수익 ·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사업장 ①				사업장 ②			
구분	정상(A)	회사(B)	과대(B-A)	구분	정상(A)	회사(B)	과대(B-A)
도급금액	100	120	20	도급금액	180	200	20
진행률(%)	20	20	-	진행률(%)	30	30	-
공사수익(누적)	20	24	4	공사수익(누적)	54	60	6

사업장 ③			
구분	정상(A)	회사(B)	과대(B-A)
도급금액	350	380	30
진행률(%)	40	40	-
공사수익(누적)	140	152	12

공사미수금 = 사업장별로 과대 인식한 공사수익의 합계 (22=4+6+12)

- (지적내용) 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하는 한편,
 -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하여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 (사실관계) C 그룹은 C 사(이하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 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 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E 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 회사는 E 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 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 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예 : 행사가격)이 누락되었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향후 계획

4. 향후 계획

-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Database 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붙임1**)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2023 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붙임1.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매출·매출원가(6 건)
 1.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2.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4.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5.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6.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 재고·유형자산(2 건)
 1.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2. FSS/25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 기타 자산·부채(4 건)
 1.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2.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 계상 오류
 4.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주식미기재 등(2 건)
 1.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2.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방법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검색경로) 금융감독원-업무자료-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번호	공개번호	제목	쟁점 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년도	첨부파일	조회수
141	FSS/2112-24	담보제공사실 주식미기재	담보제공 주식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1107호	2014		
140	FSS/2112-23	담보제공사실 주식미기재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3		
139	FSS/2112-22	특수관계자거래 주식미기재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3		
138	FSS/2112-21	특수관계자거래 주식미기재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4		
137	FSS/2112-20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4		
136	FSS/2112-19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2		
135	FSS/2112-18	선수금 미계상	선수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2		

번호	공개번호	제목	쟁점 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년도	첨부파일	조회수
6	FSS/2106-04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매출 및 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756

번호	공개번호	제목	쟁점 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년도	첨부파일	조회수
3	FSS/2106-04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매출 및 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756
2	FSS/2106-02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	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20		243
1	FSS/21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457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은 '24. 4. 25(목)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①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조심 2022 서 7076, 2024.03.1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광역철도망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면세거래로 보아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위 사업을 영세율 거래로 보아 16.2기~20.2기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시점(22.5.27.)에 비추어 개정 후 규정(조특법 §105①3호가목)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음.

(심판결정)

처분청이 2022.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함.

(판단이유)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20.12.29.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을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은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된 것임에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규정 등의 취지에 어긋남.

2024년 5월호

② 미등기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심 2023 중 9825, 2024.01.11.)

(사실관계)

청구인은 미등기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 후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나, 이후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부수토지는 등기되었으므로 부수토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음.

(처분개요)

처분청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며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심판결정)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함.

(판단이유)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의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나,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수토지의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 부수토지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③ 2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1세대로 보아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 방 4294,
2024.02.06.)

(사실관계)

부부인 청구인 AAA[남편(세대주)]·BBB(아내)는 쟁점주택①의 지분 1/2씩 각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CCC(BBB의 동생)는 쟁점주택②를 소유하고 있으며,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CCC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음.

(처분개요)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을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①·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배제하여 2023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

(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주택①·②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

(판단이유)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록하고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민법」제779조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인 AAA을 기준으로 CCC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별도로 생계를 유지(요양원 입소)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 AAA·BBB와 청구인 CCC는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①·②에 대하여는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국토부, 8천만원,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국토부, 8천만원·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음

* (대상)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 관련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전용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 우선 적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서면-2024-국제세원-0157, 2024.04.2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른 공제한도 내 금액임.
-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 이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잔액이 있으며, 당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함.
*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전액 이월 처리함.

(질의내용)

-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한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903, 2024.04.2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20**년 *월에 **광역시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실시계획>

- 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 :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용지 개발이익금 중 *,***억원 한도 내에서 조달하여 사업비 총액 *,***억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지출 후 연세대에 기부하기로 함
 - ① **사이언스파크 건축비 *,***억원
 - ② 교육 연구 기자재비 ***억원
 - ③ **사이언스파크 제반시설 운영비 ***억원
 - ④ **** 병원 건축비 *,***억원

○ 상기 사항(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자 경제청이 수익부지 개발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광역시 의회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음에 있어서 전제조건에 해당함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1안> 자본적 지출로 처리
 - <2안>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회신)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출산휴가기간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사실관계)

- “공인회계사 A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출산휴가(3개월) 및 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한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총 15개월 동안 대체인력 채용
 - 출산휴가 (3개월) 동안 기존 근로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납부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29의 3②)에서 출산휴가 중이었던 기존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 관련 처분청과 이견

(질문요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자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휴가직원 및 대체인력의 4 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육아휴직 복귀자의 복직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1안> 출산휴가기간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
 - <2안> 출산휴가기간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

(회신)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증여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사실관계)

-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2021.6.8.)
- 공동상속인: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
-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 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질의요지)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방법

- <갑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
- <을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적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매각업무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질의요지)

-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T Consulting ▪ CRM / Risk Management 등 ▪ ESG 전략 및 시스템 구축자문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